

2017. 1. 31. 결정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2016년(허) 제45호

#아동성매매
#신원공개
#검색사업자
#검색결과 삭제

**게시글 삭제 가치분결정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취소결정에 대한
허가항고 사건
2016년 (하) 제45호**

주문

본건 항고를 기각하다.

항고비용은 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항고 대리인 간다 도모히로(神田知宏)의 항고 이유에 대해

1. 기록에 따르면 본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 (1) 항고인은 아동 성매매를 했다는 피의사실에 근거하여 2014년 법률 제79호에 따른 개정 전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1년 11월에 체포되어 동년 12월에 동법 위반 죄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항고인이 상기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하 '본건 사실'이라 한다)은 체포 당일에 보도되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터넷상의 웹사이트에 전자게시판에 다수 게재되었다.
- (2) 상대방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인터넷상의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웹사이트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인 URL을 검색결과로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검색사업자'라 한다)이다.

상대방으로부터 상기와 같이 검색 결과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항고인이 거주하는 현의 명칭 및 항고인의 성명을 조건으로 검색하면, 해당 이용자에게 대해, 원결정이 인용하는 가치분 결정 별지 검색 결과 일람 기재의 웹 사이트에 대해, URL 및 해당 웹 사이트의 표제 및 발췌(이하 「URL 등 정보」라 총칭한다)가 제공되지만, 이 중에는 본건 사실 등이 기입된 웹 사이트의 URL 등 정보(이하 「본건 검색 결과」라 한다)가 포함된다.

2. 본건은 항고인이 상대방에 대해 인격권 또는 인격적 이익에 근거하여 본건 검색결과의 삭제를 요구하는 가치분명령을 제기한 사안이다.
3. (1)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이 함부로 공표되지 않을 이익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해야 한다(최고재판소 1977년 (나) 제323호 56년 4월 14일 제3소법정 판결, 민집 35권 3호 620페이지, 최고재판소 1989년 (나)제1649호 동 6년 2월 8일 제3소법정판결·민집 48권 2호 149쪽, 최고재판소 2001년 (나) 제851호, 동년 (수)제837호 동14년 9월 24일 제3소법정판결·재판집 민사207호 243쪽, 최고재판소 2000년(수)제1335호 15년 3월 14일 제2소법정판결·민집 57권 3호 229쪽, 최고재판소 2002년(수)제1656호 동15년 9월 12일 제2소법정 판결·민집 57권 8호 973쪽 참조). 한편, 검색 사업자는, 인터넷상의 웹 사이트에 게재되고 있는 정보를 망라하여 수집해 그 복제를 보존하고, 동 복제를 기본으로 한 색인을 작성하는 등 정보를 정리해, 이용자가 표시한 일정한 조건에 대응하는 정보를 동 색인에 근거해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동 프로그램은 검색 결과의 제공에 관한 검색 사업자의 방침에 따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므로, 검색 결과의 제공은 검색 사업자 자신에 의한 표현행위라는 측면을 가진다. 또한, 검색 사업자에 의한 검색 결과의 제공은 공중이 인터넷상에 정보를 발신하거나, 인터넷상의 방대한 양의 정보 중에서 필요한 것을 입수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며, 현대 사회에 있어 인터넷상의 정보 유통 기반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검색 사업자에 의한 특정한 검색 결과의 제공 행위가 위법이라고 여겨져 그 삭제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상기 방침에 따른 일관성을 가지는 표현행위의 제약인 것은 물론, 검색 결과의 제공을 통해서 완

수되고 있는 상기 역할에 대한 제약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검색 사업자에 의한 검색결과 제공행위의 성질 등을 고려하면, 검색 사업자가 어떤 자에 관한 조건 검색의 요구에 응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을 포함한 기사 등이 게재된 웹 사이트의 URL 등 정보를 검색 결과의 일부로서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이 되는지 아닌지는, 해당 사실의 성질 및 내용, 해당 URL 등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이 전달되는 범위와 그 사람이 입는 구체적 피해의 정도, 그 자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상기 기사 등의 목적과 의의, 상기 기사 등이 게재될 때의 사회적 상황과 그 후의 변화, 상기 기사 등에서 당해 사실을 게재할 필요성 등 당해 사실이 공표되지 않을 법적 이익과 당해 URL 등 정보를 검색결과로서 제공하는 이유에 관한 제반 사정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그 결과 당해 사실이 공표되지 않을 법적 이익이 우월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검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URL 등 정보를 검색 결과로부터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2) 이것을 본건에 대해 보면, 항고인은 본건 검색결과에 포함된 URL로 식별되는 웹사이트에 본건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기사 등이 게재되어 있다고 하여 본건 검색결과와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바, 아동 성매매를 했다는 피의사실에 근거해 체포되었다는 본건 사실은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지고 싶지 않은 항고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이지만, 아동 성매매수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 규정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의 대상이 되어 별칙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지금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건 검색결과는 항고인이 거주하는 지역(県)의 명칭 및 항고인의 이름을 조건으로 했을 경우, 검색결과와의 일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사실이 전달되는 범위는 어느 정도 제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모든 사정을 보면, 항고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앞의 1 (1)의 벌금형에 처해진 후에는 일정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민간 기업에서 생활하고 있음이 엿보이는 것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본건 사실이 공표되지 않을 법적 이익이 우월하다는 것이 명백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4. 항고인의 제기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시인할 수 있다.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岡部喜代子

재판관 大谷剛彦

재판관 大橋正春

재판관 木内道祥

재판관 山崎敏充